# 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

2021.4.7. 개정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원은 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.

제3조 (소재지) 본원은 경기도 포천군 소홀읍 이곡길5 에 둔다.

## 제2장 조직

제4조 (직원의 조직) 본원의 직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며 원장(초등학교장이 유치원장을 겸임), 원감(초등학교 교감이 유치원 원감 겸임), 학급당 1교사를 두며, 방과후 운영 시에는 정교사 1명 외에 방과후전담사를 둘 수 있다.

#### 제5조 (직원의 임무)

- ①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들을 감독하며 교육한다.
-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교육하며,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이를 대행한다.
-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.
- ④ 방과후전담사는 방과후과정반 활동을 전담하며 특성화활동 운영시 유아를 지원하고 교실 정리정돈 및 청결은 교육과정 담당교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.

#### 제6조(위원회 조직)

-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유치원 교원위원1인, 유치원학부모위원1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곡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.

# 제3장 교육연한, 교육일수, 휴업일

제7조 (교육연한)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.

제8조 (학기)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 1학기는 3월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·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원장이 정한 날까지,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## 제9조 (수업일수 등)

①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의거하여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

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.

- 1.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(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: 수업일수의 10분의 1
- 2. 법 제31조1항·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: 해 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
-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1.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방문, 가족동반여행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등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'심각, 경계'단계인 경우에 한해 '가정학습'도 교외체험학습 신청,승인 사유해 해당한다.
- 2.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연간 30일이며,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교육부나 교육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3.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체험일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체험 후 5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한다.
- ③ 하루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 4~5시간 운영하고,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시간 포함 8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하나 학부모의 동의하에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원장은 교육부가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(원격수업 포함)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0조 (휴원일) 본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
- ② 개교기념일 : 4월 1일
- ③ 여름 · 겨울방학과 학기말의 휴가
- ④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의거 원장은 비상재해 및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- ⑤ 원장은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기 주도 학습의 날로 정하여 휴원할수 있다.
  - ⑥ 휴원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.

# 제4장 학급편성과 학급정원

제11조 (학급편성) 본원은 1학급으로 편성하며 방과후과정 1학급을 포함한다. 제12조 (원아정원) 본원의 원아 정원은 1학급 18명(만3-5세 혼합연령)으로 한다.

# 제5장 교육과정

#### 제 13조(교육과정)

- ① 본원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을 근거로 원장이 지역의 특수성과 유치원의 실정에 알맞게 편성· 운영한다.
- ② 유치원의 교육활동은 유아의 연령, 발달 정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신체운동·건강, 의사소통, 사회관계, 예술경험, 자연탐구 영역을 통합하여 놀이중심으로 운영한다.

## 제6장 생활지도

#### **제14조**(교육 3주체의 책무)

- ①원장과 교원, 학부모 등 보호자(이하 "보호자"라 한다),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②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.
- ③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,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.

제15조(생활지도의 범위)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

- 1.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
- 2.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
- 3.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
- 4.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
- 5.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
- 6. 그 밖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
#### **제16조**(조언 및 상담)

- ①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요청하는 경우 조언할수 있다.
- ②원장과 교원,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의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.
- ③원장과 교원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,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,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폭언, 협박,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.

#### **제17조**(주의 및 훈육)

- ①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 및 수업권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.
- ②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,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경우 훈육을 할 수 있다.
- ③ 원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, 제지,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.
- ④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,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- ⑤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
- 1.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
- 2. 교육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물품
-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문제가 발생한 경우

제18조(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)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제 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제7장 입·퇴학, 수료 및 졸업

#### 제19조(입학)

-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.
- ② 입학 전형은 당해 학년도 원아모집 규정에 의한다.
- ③ 입학 시기는 당해 학년도 11월말까지로 하며, 인가 정원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(전입)

본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.

#### 제21조(퇴학)

- ①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.
  - ②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   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석한 때
    - 2. 질병 및 기타사유로 본인 및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

#### 제22조(수료 및 졸업)

-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.
- ②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/3 이상으로 한다.
- ③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2/3이상 이수하고 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- ④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3, 4세 유아와 중도 입학, 휴학 등으로 출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2/3 미만인 만5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.

## 제8장 수업료 및 기타징수비용

제23조 (수업료와 입학금) 본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24조 (기타비용징수) 수익자부담경비(현장학습비, 특성화수업비용 및 졸업앨범비 등)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 제8장 재정

제25조 (회계연도) 본원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 제26조 (예산의 편성 및 결산) 교육청의 지시에 따른다.

## 제9장 규칙개정절차

#### 제27조(규칙개정)

- ① 규칙은 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(법, 조례, 지침 등)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
- ② 제1항의 규칙개정은 학교장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③ 제안된 규칙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 등에 20일이상 공고한다.
- ④ 개정시 법령(법, 조례, 지침 등)범위 내에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 행 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규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제3조(기타사항)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